

예 산 총 칙

2018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61,000,000	13,830,000
일반회계		414,006,000	12,420,180
특별회계		46,994,000	1,409,820
	기타특별회계	46,994,000	1,409,82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235,531	397,066
	수질개선특별회계	29,135,347	874,06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10,962	18,329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738,587	22,15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0,100	1,503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669,178	50,075
	치수사업특별회계	1,549,519	46,486
	기반시설특별회계	4,776	143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677,031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6 조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회계년도 중에 교부되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상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